

## 2024년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2024년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30일

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

### < 2024년도 보건의료R&D 정책방향 >

#### “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4.0 시대 구현”

- ①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, ②보건안보 위기 시, 100일 내 백신·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, ③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(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, '23.4.)

#### 2024년도 전략목표

보건의료 R&D 임무 지향성 강화,  
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연구기반 조성

#### 4대 전략별 중점 추진방향

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투자	① 필수의료 정책지원 ② 주요 질환의 조기진단·치료를 위한 혁신기술 확보 ③ 비용효과적인 환자 중심 보건의료기술 개발 ④ 국민 생활 건강증진 연구 강화
미래 위협을 대비하는 든든한 보건안보 확립	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백신·치료제 개발 ⑥ 선제적 감염병·재난 대응체계 구축
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	⑦ 데이터·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⑧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⑨ 원천기술 기반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⑩ 첨단 융·복합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⑪ 한의·피부·치의 건강기술 연구개발
혁신을 촉진하는 R&D 생태계 조성	⑫ 보건의료 R&D 혁신생태계 활성화 ⑬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혁신 환경 조성 ⑭ 혁신 생태계 핵심전문인력 양성

# I. 공고 개요

※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제안요청서(RFP)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,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.

□ 공고시기 : 2024년 4월 30일

구분 (내역사업)	RFP 번호	공고단위 (RFP명)		지원규모	지원기간	과제구성 요건* (아래 참고)	선정예정 과제수 (이내)
1. 국가 한의임상 연구분야	1-1	가이드라인 개발	근거기반 지침개발	324백만원 이내 (1차연도 135백만원 이내)	2년 이내 * 1차연도 5개월	①,②,④	2
			근거창출 지침고도화	205백만원 이내/년 (1차연도 85.4백만원 이내)	3년 이내 * 1차연도 5개월	①,②,④	5
	1-2	한의학료 기술 최적화 임상연구	근거창출 연구	300백만원 이내/년 (1차연도 125백만원 이내)	5년 이내 (2+3) * 1차연도 5개월	①,②,④	2
			근거합성 연구	325백만원 이내/년 (1차연도 135백만원 이내)	2년 이내 * 1차연도 5개월	①,②,④	4
2. 혁신형 한의중개 연구분야	2-2	한의중개 개인연구	신진도약 창의비상	80백만원 이내/년 (1차연도 33.46백만원 이내)	3년 이내 * 1차연도 5개월	①,②,④	13

\*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

- ① (주관)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
- ② (주관+공동)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
- ③ (주관+공동, 주관+공동)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
- ④ (복수 주관 불가)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

① 주관

② 주관+공동

③ 주관+공동, 주관+공동

④ 복수 주관 불가

과제 구성  
요건  
(예시)

주관	○○대 / A교수
----	-----------

주관	○○대 / A교수
공동	△△대 / B교수

주관	○○대 / A교수
공동	△△대 / B교수
주관	○○대 / C교수
공동	△△대 / D교수

주관	○○대 / A교수
공동	△△대 / B교수
주관	○○대 / C교수
공동	△△대 / D교수

※ 지원분야·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, 접수 경쟁률,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

\*\* 각 컨소시엄에 대한 설명은 해당 RFP 참조

## II. 신청요건

### 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※ 상세 지원대상은 제안요청서(RFP)별로 확인 필요

※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

※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**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**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(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)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### □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(RFP)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

※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함

·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
□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

<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(3책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>

구분	연구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
주관연구개발과제(기관)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자
공동연구개발과제(기관)	참여연구자	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3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

·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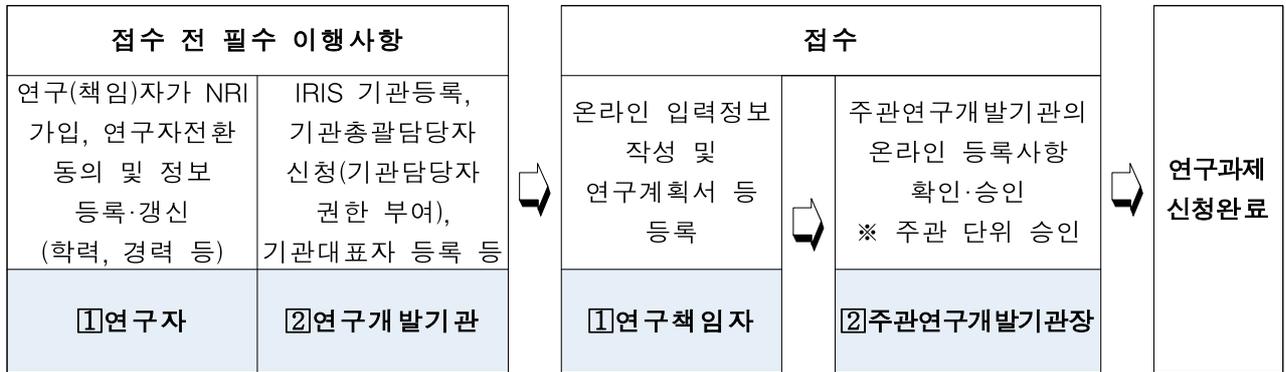
### Ⅲ. 신청 방법

#### □ 공고 및 접수처

- 법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

#### □ 신청절차

- 법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#### □ 공고 및 접수 기한

공고대상	연구책임자 과제 신청기간(전산입력)*	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기간**
2024년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	2024. 5. 29.(수) 16 : 00	2024. 5. 29.(수) 16 : 00

\* 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함

\*\*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(단,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)

※ 전산입력(접수)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대상에서 제외됨

## 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

※ 상세내용은 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 → 자료실 → 법규/서식에서 확인 가능

※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

## V. 기 타

□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○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2024.2.29. 개정)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
○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연구개발기관 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
	정부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
비영리기관	100% 이하	-	-
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
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	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
$\text{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} = \frac{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{(\text{해당 연구개발기관})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 \times 100$			

※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
## 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
 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’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  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에서 심의

## □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과제가 선정된 이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
## □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
-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‘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’의 담당 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·기탁하여야 함

## 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※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

## VI. 문의처

### □ 사업공고 열람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

### □ 사업별 담당자 안내

- 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 관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1877-2041

※ IRIS 콜센터 운영시간 : 09:00 ~ 18:00

- 공고단위(RFP)별 담당자 안내

- 별도 공지 예정